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가단51456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탁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 1.

체결된 매매계약은 9,637,767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37,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21차전132835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3. 10. “C은 원고에게 8,82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청구원인은 별지 기재 참조).

나. 2021. 6. 16.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9,637,767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였다가 피고의 동생인 C 앞으로 2016. 6. 1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9. 8.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9.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8. 9.경 원고에게 C의 채무액 10,838,203원을 송금하였고, 김포시의 압류금액 역시 변제하고 2019. 8. 14.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어촌공사에 2020. 6. 29.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상 구상금채권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보건대, 을 제1,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00. 6.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점, 피고가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금이 오간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피고가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월세 수입은 피고가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소유권명의를 회복한 것을 두고 사해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천시

[도로명주소]부천시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0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천시 대 169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34.0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1692.6분의 6.85, 끝.

지급명령 청구원인

청 구 위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8,827,000 원
2. 위 1항 금액 상 금8,783,690원에 대하여 2020년 07월 30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9.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65,000 원
(내역 : 송달료 61,200 원, 인지액 3,800 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보험계약자 : C
 종권번호 : D
 피보험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험가입금액: 금9,272,620원
 보험상품 : 이행(지급)보증보험
 연대보증인 : 없음

2.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채권자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 후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채무자는(불은) 위 2항 약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채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청구위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민사소송법 제463조(판합법원)에 의거, 외부이행지소제의 귀법원에 본 신청을 합니다.
 (1) 위 1항 "가"호 채무내역 및 지연손해금 내역

보험금 지급일 : 2020년 06월 29일 지급 보험금 : 8,783,690원
 보험금 환입 : 0원 원금 잔액 : 8,783,690원
 지연손해금 환입:0원
 확정지연손해금: 43,310원 (산출일: 2020년 07월 29일)

순번	기 산 원 금	이율	산출시작일	산출종료일	일 수	지 연 손 해 금
1	8,783,690	6.0	2020-06-30	2020-07-29	30	43,316
2	8,783,690	9.0	2020-07-30	2021-02-08	194	420,173

